



제42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	---	---	---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1
가. 세입결산	1
(1) 총 괄	1
(2) 세입 주요내역	1
(3) 분 석	2
나. 세출결산	4
(1) 총 괄	4
(2) 이·전용 등	6
(3) 분 석	9
(4) 프로그램	18
 2. 재무결산	 21
가. 재정상태 분석	21
나. 재정운영 분석	22
다. 순자산변동 분석	24
 3. 성인지 결산	 25

Ⅱ. 검토의견

【총괄】

1.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필요	26
가. 개 요	26
나.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를 위한 인력관리 필요	28
다.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32
라. 과도한 이·전용 방지를 위한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편성 필요	36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39
가. 개 요	39
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40
다.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한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46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52
가. 개 요	52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54
다.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59
2. 재외선거관리(1131-305)	62
가. 개 요	62
나. 재외선거 국외출장 효과성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63
다. 재외선거인 투표율 제고 및 국외부재자 규모 확대 방안 모색 필요	68

3. 위탁선거관리(1131-306)	71
가. 개 요	71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73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79
가. 개 요	79
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분산 편성·통합 집행 및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80
 5.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88
가. 개 요	88
나.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 제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89
 6.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94
가. 개 요	94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95
다.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필요	98

문 의 처
02-6788-5332
02-6788-5343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0억 1,700만원으로, 69억 2,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81.8%인 56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합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재산수입	38	39	39	102.6	100.0	-
경상이전수입	9,969	6,847	5,589	56.1	81.6	1,25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43	43	430.0	10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4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3,900만원,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55억 8,900만원, 잡수입인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10,017	6,929	5,671	△4,346	
◦	재산수입	38	39	39	1	
	▪ 토지대여료	23	15	15	△8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4	4	△1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10	19	19	9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9,969	6,847	5,589	△4,380	
	▪ 과 태 료	400	300	241	△149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3	2	2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	281	280	280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등
	▪ 가 산 금	1	1	1	-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9,565	6,263	5,065	△4,500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43	43	33	
	▪ 기타잡수익	10	43	43	33	선거장비 매각대금 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56억 7,100만원
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8억 7,100만원 대비 550.7% 증가하였음.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4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
2023년	863	2,180	871	101.0	40.0	1,293	16
증감율	1060.7	217.8	550.7	-	-	△2.7	△1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00억 1,700만원의 56.6%인 56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미달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4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기타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20년	10,465	12,347	12,215	1,750	116.7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2024년	10,017	6,929	5,671	△4,346	56.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및 후보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8,572억 2,700만원 이고,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572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8,5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의 0.3%인 26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 계	399,967	857,227	857,227	857,228	854,516
<1100선거의공정한관리계>	113,247	560,798	560,798	557,510	556,790
<1131공직선거관리계>	47,964	434,171	434,171	441,284	441,079
• 대통령선거(1131-300)	-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932	280,992	280,992	287,731	287,613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597	163	163	93	90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재외선거관리(1131-305)	7,451	9,891	9,891	8,556	8,539
• 위탁선거관리(1131-306)	488	258	258	240	230
• 선거보전금(1131-307)	-	107,224	107,224	109,406	109,380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496	35,643	35,643	35,258	35,227
<1132정당발전지원계>	47,843	110,154	110,154	101,072	101,068
• 정당사무지원(1132-320)	214	80	80	69	65
• 정당보조금(1132-322)	47,629	110,074	110,074	101,003	101,003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575	15,720	15,720	14,493	13,998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484	1,266	1,266	1,006	920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391	1,369	1,369	1,247	1,213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120	1,354	1,354	1,170	1,15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1,318	10,947	10,947	10,286	10,024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262	784	784	784	685
<1135선거관리지원계>	865	753	753	660	64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15	102	102	102	97
• 선거방송토론(1135-314)	460	358	358	275	271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90	293	293	283	277
<7100선거관리행정지원계>	286,721	296,429	296,429	299,718	297,726
<7101인건비계>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 인건비(7101-150)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7111기본경비계>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7132기관운영지원계>	52,489	52,442	52,442	53,170	52,280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85	442	442	425	41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760	644	644	614	589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524	412	412	402	393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274	1,442	1,442	1,427	1,413
• 국제교류협력(7132-345)	963	1,130	1,130	1,118	1,099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77	164	164	164	164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519	987	987	952	917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6,483	19,500	19,500	19,500	19,228
• 위원회운영(7132-351)	2,219	1,761	1,761	1,708	1,685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2,036	2,001	2,001	1,987	1,947
• 청사관리(7132-354)	25,049	23,959	23,959	24,873	24,426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6,768	6,836	6,836	6,836	6,769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55	563	563	563	528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13	6,273	6,273	6,273	6,241
<7137예비금계>	64	196	196	196	0
• 예비금(7137-430)	64	196	196	196	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4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49억 7,400백만원,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30억 1,3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3억 2,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7%인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36억 7,300만원 대비 304.8% 증가하였음. 주요 내역은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111억 3,000만원, 부담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억 6,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857,227	857,228	24,183	2.8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16,553	3.0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299,718	7,630	2.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9,315	-	9,315	순증
전 용	14,868	3,673	11,195	30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유예금액임.

[2024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560,798	557,510	26	0.005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26	0.0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26	1	25	3,736.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 수준인 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8억 5,500만원 대비 60.8%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4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4억 9,600만원, 선거관리지원 1,500만원, 인건비 3억 6,400만원, 기본경비 4억 7,400만원, 기관운영지원 8억 9,0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857,227	857,228	2,685	0.3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694	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299,718	1,991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685	6,855	4,170	△6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4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1억 9,600만원으로, 전액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196	-	-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8,572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72억 2,800만원임. 이 중 99.7%인 8,5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003%인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3%인 26억 8,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857,227	1	-	±37,066	857,228	854,516	99.7	99.7	26	0.003	2,685	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국단위 공직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 등 주요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4,410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1,010억 6,8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억 9,800만원, 선거관리지원 6억 4,500만원, 인건비 2,241억 3,800만원, 기본경비 145억 4,000만원, 기관운영지원 522억 8,0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억 6,9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20년	725,084	742,820	710,729	98.0	95.7	33	32,059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2024년	857,227	857,228	854,516	99.7	99.7	26	2,68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113.6% 증가한 8,545억 1,600만원으로 이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 공직

선거 실시로 선거관리경비 및 선거보조금 등 세출예산액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용액은 전년대비 순증하였으며, 전용액은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4.8% 증가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4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49억 7,400백만원,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30억 1,3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3억 2,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7%인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36억 7,300만원 대비 304.8% 증가하였음. 주요 내역은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111억 3,000만원, 부담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보조금 부족액 23억 6,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9,315	-	9,315	순증
전 용	14,868	3,673	11,195	30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 및 202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부족,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등 부족,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재원 등이 부족임. 또한 2024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국회의원선거 경비 부족, 공무원 보수 부족, 청사 공공요금 부족, 부담비용 청구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이·전용액	7,082	257	81,349	3,673	24,183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98	0.07	9.3	0.9	2.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20년	계	7,082
	▪ 코로나19 대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물품 구입	5,000
	▪ 공정선거지원단 고용부담금 부족	84
	▪ 선거공보 발송 등 우편요금 부족	1,915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	52
	▪ 대체청사 담장붕괴에 따른 차량피해 손실보상금 소요	20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 선거전용통신망 사업비 분석 용역 관련 부족	11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 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이용 4,384, 전용 50,182)	54,566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재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2024년	계	24,183
	▪ 수검표 도입 및 (사전)투표 참관인 증가 등에 따른 국선 선거경비	14,181
	▪ 공무원 보수 부족액	5,943
	▪ 부담비용 청구대상 정당수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68
	▪ 각급위원회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475
	▪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컨설팅 재원 부족액	140
	▪ 직원 상시학습 여비 부족액	72
	▪ 재외선거관련 인력운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26	1	25	3736.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20년도에는 0.004%,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2024년도에는 0.003%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이 월 액	33	64	122	1	26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04	0.06	0.01	0.001	0.0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20년	계	33
	▪ 선거물품 집중보관용역 대금 미지급금	2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유예금	7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파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2024년	계	26
	▪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 유예금	2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8억 5,500만원 대비 60.8%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이며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4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4억 9,600만원, 선거관리지원 1,500만원, 인건비 3억 6,400만원, 기본경비 4억 7,400만원, 기관운영지원 8억 9,000만원, 선거 행정정보화 6,7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4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685	6,855	4,170	△6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20년도 이후 5.0% 내외의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 이후는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불 용 액	32,059	25,259	30,665	6,855	2,685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4.4	6.6	3.5	1.7	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20년	계	32,059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2,240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12,046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 인건비 집행잔액	4,035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33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1,505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 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2023년	계	6,855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2024년	계	2,685
	▪ 인건비 집행잔액	364
	▪ 전산운영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2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26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7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계>	47,964	434,171	434,171	441,284	441,079
• 대통령선거(1131-300)	-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932	280,992	280,992	287,731	287,613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597	163	163	93	90
• 재외선거관리(1131-305)	7,451	9,891	9,891	8,556	8,539
• 위탁선거관리(1131-306)	488	258	258	240	230
• 선거보전금(1131-307)	-	107,224	107,224	109,406	109,380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496	35,643	35,643	35,258	35,227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2정당발전지원계>	47,843	110,154	110,154	101,072	101,068
• 정당사무지원(1132-320)	214	80	80	69	65
• 정당보조금(1132-322)	47,629	110,074	110,074	101,003	101,003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575	15,720	15,720	14,493	13,998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484	1,266	1,266	1,006	920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391	1,369	1,369	1,247	1,213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120	1,354	1,354	1,170	1,15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1,318	10,947	10,947	10,286	10,024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262	784	784	784	685
<1135선거관리지원계>	865	753	753	660	64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15	102	102	102	97
• 선거방송토론(1135-314)	460	358	358	275	271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90	293	293	283	27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프로그램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경비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민주적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 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 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계>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 인건비(7101-150)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7111기본경비계>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7132기관운영지원계>	52,489	52,442	52,442	53,170	52,280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85	442	442	425	41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760	644	644	614	589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524	412	412	402	393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274	1,442	1,442	1,427	1,413
• 국제교류협력(7132-345)	963	1,130	1,130	1,118	1,099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77	164	164	164	164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519	987	987	952	917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6,483	19,500	19,500	19,500	19,228
• 위원회운영(7132-351)	2,219	1,761	1,761	1,708	1,685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2,036	2,001	2,001	1,987	1,947
• 청사관리(7132-354)	25,049	23,959	23,959	24,873	24,426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6,768	6,836	6,836	6,836	6,769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55	563	563	563	528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13	6,273	6,273	6,273	6,241
<7137예비금계>	64	196	196	196	0
• 예비금(7137-430)	64	196	196	196	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859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음. 유동 자산은 50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급보증금 등 기타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투자자산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투자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일반유형자산은 7,550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취득 및 정부내자산수증, 구축물·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미완공청사가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무형자산은 109억 9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기타비유동자산은 148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선급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60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5% 감소하였음. 유동부채는 33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이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장기차입부채는 26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9% 감소하였으며, 이 역시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799억 400만원이며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85,935	752,452	33,483	4.4
부 채	6,031	9,501	△3,470	△36.5
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8,713억 1,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0.3% 증가함.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5,341억 5,9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01.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단위 공직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의 증가에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39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20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2%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익 증가에 기인한 것임.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534,159	88,851	445,308	501.2
II. 관리운영비	339,196	326,399	12,797	3.9
III. 비배분비용	2	18	△16	△88.9
IV. 비배분수익	2,042	1,000	1,042	10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1,315	414,269	457,046	110.3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71,315	414,269	457,046	11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799억 4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429억 5,1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8,713억 1,5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액
9,100억 9,600만원과 조정항목 △18억 2,800만원을 더한 값임.

[2024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42,951	701,495	41,456	5.9
II. 재정운영결과	871,315	414,269	457,046	110.3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910,096	456,205	453,891	99.5
IV. 조정항목	△1,828	△480	△1,348	△280.8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79,904	742,951	36,953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4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42,951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871,315 백만원
- 재원의 조달	916,303 백만원
• 국고수입	854,516 백만원
• 제재금수익	545 백만원
• 기타비교환수익	3,882 백만원
• 무상이전수입	512 백만원
• 기타재원조달	56,848 백만원
- 재원의 이전	6,207 백만원
• 국고이전지출	5,671 백만원
• 무상이전지출	537 백만원
- 조정항목	△1,828 백만원
• 자산재평가이익	△1,828 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성인지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은 공공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00만원이고 집행액은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55.0%임.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3년 (c)	'24년 집행액(c)			전년 대비 증감 (b-c)	전년 대비 증감률 (b-c/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68	168	92	55.0	24	35.6
일반 회계	(1)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여성 정치참여 교육	68	168	92	55.0	24	35.6
	특별회계 소계(B)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	-	-	-	-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68	-	-	-	-	-
	합 계(A+B)	68	168	92	55.0	24	35.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 검토의견

【총 괄】

1.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휴·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인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청사관리 사업의 경우 편성된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대비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지출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탄력적·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전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¹⁾
- ☐ 예산의 이용은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용은 세항(단위사업)이나 목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²⁾

1)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p.261.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용액은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49억 7,4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충당을 위한 13억 2,800만원, 국회의원선거 경비 부족으로 인한 30억 1,300만원 등임.
- 또한 전용액은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우편요금 등 국회의원선거 경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111억 3,000만원, 선거보전금 부족으로 인한 23억 6,700만원,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9억 6,8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4억 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증감율
이용	합 계	9,315	0	9,315	-
	일반회계	9,315	0	9,315	-
전용	합 계	14,868	3,673	11,195	304.8
	일반회계	14,868	3,673	11,195	30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p. 263.

나.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를 위한 인력관리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4/4분기 인건비 중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용 49억 7,400만원, 전용 9억 6,800만원, 세목조정 5억 9,300만원 등 총 65억 3,5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인건비 예산중 각각 43억 9,900만원, 36억 7,2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반대로 공무원 보수(110-01목)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59억 4,3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고, 5억 9,300만원을 기타직 보수(110-02목) 및 연가보상비(110-05목)에서 세목조정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인건비 부족에 대해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예상보다 복직자가 크게 증가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늘어나 예산의 초과집행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월별 인원 자료를 보면 선거 이후 7월부터 11월까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24년 월별 정·현원, 휴·복직자 등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2,982
현원	2,963	2,967	2,971	2,971	2,965	2,982	2,998	2,995	3,000	2,994	2,988	2,978
결원	-19	-15	-11	-11	-17	0	16	13	18	12	6	-4
휴직	165	162	170	168	176	172	124	119	114	119	124	127
복직	20	1	1	1	5	7	58	5	8	3	0	4
채용	98	11	11	3	0	0	14	0	1	8	0	4

* 휴직의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누계를, 복직 및 채용의 경우 당월 합계를 의미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와 같은 인건비 예산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5개 사업 으로부터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의 예산이 인건비로 이·전용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 근무 절감 노력, 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자체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입장임.
- 하지만 인건비 충당을 위한 과도한 이·전용은 타 세부사업의 필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지연 실시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일례로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사업의 경우 2024년도 편성 예산 1억 6,300만원의 42.9%에 달하는 7,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는데,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축소 또는 미추진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재보궐선거관리·인건비 세부사업 상호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이 용 (24.12.18)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61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보수 부족재원 마련
		공공요금및세제 (210-02)	5			
		특근매식비 (210-05)	3			
		임차료 (210-07)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의 휴직이 업무량이 많은 선거철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선거가 끝난 후 복직자가 늘어나는 등 인력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휴·복직으로 인한 인건비 이·전용 과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자제하도록 기관 내부에 안내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타 시·도로 전보 조치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예기치 못한 휴·복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휴·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건비의 과부족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이·전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은 직원 업무능력·행정 능률성 향상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1,400만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95.9%)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644	644	-	△102 72	-	614	589	-	25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에서 2022년에는 1억 400만원, 2023년은 7,300만원을 전용 및 세목조정하는 등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과도한 예산 조정이 없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2022~2023년 선거관리역량강화 이·전용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액	조정액	이·전용 및 조정 사유		불용액
			~ 에서	~ 으로	
2022	-	44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90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청사관리(7132-354-210-07)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액	조정액	이·전용 및 조정 사유		불용액
			~ 에서	~ 으로	
	-	10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16)	청사관리(7132-354-210-07)	
	6	-	유상 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20-01)	청사관리(7132-354-210-07)	
	-	44	조직역량 강화사업 추진 관련 사무기기 등 임차료 부족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7)	
2023	-	7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절차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투개표 실습장비 등 임차비 부족		43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1)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210-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선거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강화사업(2022년), 절차사무관리 역량강화사업(2023년)의 부족한 예산을 전용 및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고, 향후 배정된 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024년에도 사업 내 전용 7,200만원, 타 사업으로의 전용 총 3,000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2024년 선거관리역량강화 이·전용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4.11.1.)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일반수용비 (210-01)	53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국내여비 (220-01)	직원 상시학습 (연수원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여비 부족
		특근매식비 (210-05)	9			
		기타운영비 (210-16)	10			
전 용 (24.12.18.)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일반수용비 (210-01)	6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특근매식비 (210-05)	2			
		임차료 (210-07)	1			
		국내여비 (220-01)	1			
		사업추진비 (240-01)	17			
		포상금 (310-03)	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2024년도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의 이·전용 등 세부내역을 보면, 2024년 11월 직원 상시학습 여비 부족으로 인해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에서 총 7,2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목)로 전용하였고, 2024년 12월 인건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에서 총 3,000만원을 인건비 보수(110-01목)로 전용하였음.

- 예산의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이·전용은 일정 부분 필요한 제도이나 남용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사업 예산이 2025년 전액 삭감되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위원회별 분임활동 지원, 직원 상시학습 등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과도한 이·전용 방지를 위한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편성 필요

- 청사관리(7132-354) 사업은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관리 인력 인건비 지급 및 사회복지요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48억 7,300만원 중 244억 2,600만원을 집행 (98.2%)하고 4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청사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본예산	추경(A)								
23,959	23,959	-	△668 1,583	-	24,873	24,426	-	447	25,0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2024년도 청사관리 사업 내 청사 유지관리 내역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에서 13억 2,800만원, 청사관리 사업 내 타 세목에서 2억 5,500만원 등 총 15억 8,300만원을 이·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해당 이·전용 금액은 공공요금및제세 목에 편성된 본예산 19억 1,600만원의 82.6%에 달하는 것으로, 편성예산 대비 과도한 금액이 이·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동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의 경우 2023년에도 10억 5,800만원의 예산을 이·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해당 예산이 필요 수준만큼 편성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2022~2024년 청사 유지관리 내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년도	2,722	-	△12	-	2,711	2,375	-	336
2023년도	3,155	-	1,058	-	4,213	4,079	1	133
2024년도	1,916		1,583		3,499	3,368	-	13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초과소요가 발생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해당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 삭감되어 예산부족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 ☐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은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수도 요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각 연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2년은 23억 7,500만원, 2023년도 40억 7,900만원, 2024년은 33억 6,800만원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실제 지출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필요 수준만큼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정확한 지출 소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행하고 있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한 관리권한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당선무효된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국고귀속대상 정치자금 등으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5억 6,500만원이며, 62억 6,3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50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예산액 (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C/A	C/B		
기타경상이전수입	9,565	9,565	6,263	5,065	53.0	80.9	1,197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³⁾에 따라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하는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및 「정치자금법」 제18조⁴⁾에 따른 불법후원금 국고귀속액 등이 해당함.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의 종류별로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을 경우 기탁금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후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또는 정당은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함.

□ 2020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하여 사후 징수 결정을 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이 100%로 고정되는 결산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국회와

3)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 ⑤ (생략)

4) 「정치자금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⁵⁾에 따라 2021년부터는 이전의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에 반영되었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0.9%로 과거 미수납액까지 징수결정액에 반영된 2021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11억 9,700만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	10,015	10,015	11,970	11,970	119.5	100.0	-	-
'21	1,380	1,380	2,294	914	66.2	39.8	1,380	-
'22	3,695	3,695	7,427	6,148	166.4	82.8	1,279	-
'23	710	710	1,729	476	67.1	27.5	1,253	-
'24	9,565	9,565	6,263	5,065	53.0	80.9	1,197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으로, 특히 국가선거보전비용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국가선거보전비용 등이 당선

5) (2018회계연도 결산 행안위 검토보고서) 징수사유가 발생한 세입을 즉시 징수결정액에 계상하고, 실제 세입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선거비용 반환채권액 전체가 아닌 반환된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수입징수 결의를 함으로써 미수납액에 대한 미납·결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채권관리 부실

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환수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 2024년까지의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의 미수납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에 반환명령된 금액은 없었으나, 2024년 이전의 미반환액까지 포함하면 2025년 1월 31일 기준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은 총 11억 5,700만원이며, 모두 임의체납⁶⁾되었음.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1. 31. 기준)

연 도	반환명령액	미반환액	주요 미반환 사유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체납
2018년 이전	6,961	945	-	-	945
2019	210	-	-	-	-
2020	240	134	-	-	134
2021	464	-	-	-	-
2022	78	78	-	-	78
2023	181	-	-	-	-
2024	-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체납기간별로 보면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11억 5,700만원 중 9억 4,500만원(81.7%)이 5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며, 나머지 2억 1,200만원(18.3%)만 체납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미반환액의 대다수가 장기 체납금액임을 알 수 있음.

6) “임의체납”이란 납기미도래나 징수유예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체납한 경우로서 반환자가 비용을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액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함.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1. 31. 기준)

구 분	체납기간						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기간별 현황	-	-	2	212	9	945	11	1,15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나 징수유예와 달리 납기도래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 등에 따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체납액의 대다수가 5년 이상 체납되어 해당 채권이 시효⁷⁾의 완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등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멸시효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징수(재)위탁을 하는 경우 민법 제168조⁸⁾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중단되는데, 미반환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징수불가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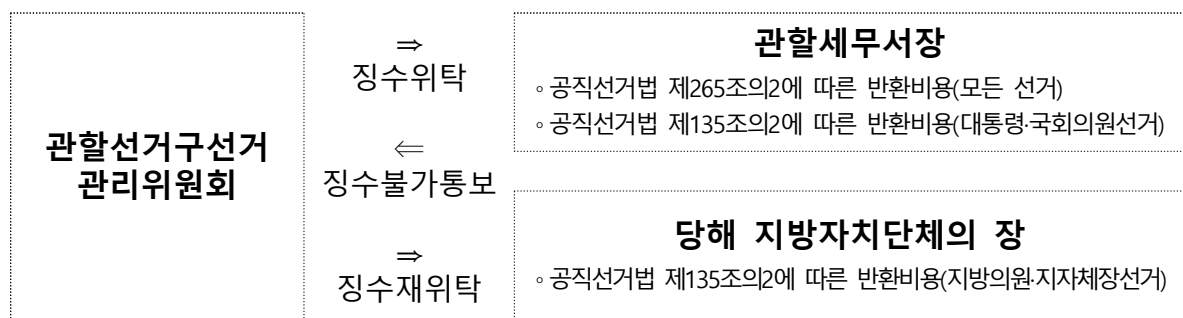
7)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이처럼, 징수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후 미반환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수를 재위탁하는 등 반환채권액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징수(재)위탁 절차>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서에 징수위탁한 172건(262억 8,900만원)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시 징수위탁한 건은 3건(8,200만원)에 불과하고 이 중 2건은 재위탁하여 반환채권액의 징수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69건(262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다시 징수위탁을 하지 않아 선거비용 반환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추가 조사하여 징수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음.⁹⁾

9)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징수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6명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이후 반환의무자의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의 반환의무자에게 3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체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를 (재)위탁하는 등 시효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한 수납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 추가적인 행정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으로 확인되는 등 다시 징수위탁을 하였다면 반환채권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부적정(주의), 2019년 10월 17일.

10) 제21대국회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의안번호 제2113909호, 제2125417호)

다. 지방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에 대한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당선무효된 후보자 등이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을 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에 반영되어있는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현황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 귀속분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결산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주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서 해당 내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하여는 직접 수입징수결의하거나 납입고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수입징수결의나 납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결산상 이월이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채권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해당 미반환액 전체에 대하여 수입징수결의를 하여 이를 결산상에 온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207억 7,400만원(69건) 중 수입징수 결의가 완료된 것은 47억 9,900만원(29건)에 불과하며, 전체의 76.9%에 이르는 159억 7,500만원(40건)의 채권은 수입징수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비 세입의 결손 및 부적정한 채권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의 미이행이 많은 편이며, 전체 교육감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179억 2,000만원 중 수입징수 결의가 완료된 액수는 30억 5,900만원으로 전체의 17.1%에 불과함.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징수결의 현황>

(단위 : 백만원, 2025. 1. 31. 기준)

구 분	완료		미완료		전 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9	4,799	40	15,975	69	20,774
지방자치단체	26	1,740	27	1,114	53	2,854
서울	-	-	4	85	4	85
부산	-	-	4	138	4	138
대구	-	-	3	164	3	164
인천	-	-	-	-	-	-
광주	-	-	1	5	1	5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5	393	-	-	5	393
강원	-	-	1	29	1	29
충북	2	119	1	91	3	210
충남	4	221	1	11	5	232
전북	3	189	-	-	3	189
전남	5	275	5	160	10	435
경북	5	484	3	227	8	711
경남	2	59	4	204	6	263
제주	-	-	-	-	-	-
교 육 청	3	3,059	13	14,861	16	17,920
서울	-	-	3	7,039	3	7,039
부산	-	-	2	1,588	2	1,588
대구	-	-	-	-	-	-
인천	-	-	2	1,416	2	1,416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1	428	1	428
세종	-	-	-	-	-	-
경기	-	-	-	-	-	-
강원	1	580	-	-	1	580
충북	-	-	1	493	1	493
충남	2	2,479	-	-	2	2,479
전북	-	-	1	321	1	321
전남	-	-	1	792	1	792
경북	-	-	1	1,299	1	1,299
경남	-	-	1	1,485	1	1,485
제주	-	-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술한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음. 그러나, 당선무효된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있고, 미반환된 지방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에 대한 관리업무는 넓게 보았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선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도 차기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의 사례¹¹⁾가 다수 발생하는 등 선거비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공직선거 출마 및 보전비용 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1. 31. 기준)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 금액	반환 금액	미반환 금액	재출마 선거	보전 금액
1	제4회 지방선거	19	-	19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43
2	제4회 지방선거	26	-	26	제6회 지선(낙선)	-
3	제4회 지방선거	12	9	3	제6회 지선(낙선)	-
4	제4회 지방선거	24	-	24	제6회 지선(당선)	46
5	제4회 지방선거	21	-	21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71
6	제4회 지방선거	17	-	1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낙선)	47

11) 뉴스1(2023.10.10.),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전주MBC(2022.5.27.), “보전금 반환 안 한 채 재출마..○○○, ○○○ 후보”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 금액	반환 금액	미반환 금액	재출마 선거	보전 금액
7	제5회 지방선거	128	118	10	제7회 지선(낙선)	46
8	제5회 지방선거	85	-	85	제7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
9	제5회 지방선거	37	-	3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75
10	제5회 지방선거	83	-	83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사퇴)	75
11	제5회 지방선거	110	-	110	제8회 지선(낙선)	139
12	제5회 지방선거	21	-	21	제7회 지선(낙선)	-
13	제5회 지방선거	32	-	32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30
14	제5회 지방선거	105	-	105	제8회 지선(낙선)	106
15	제5회 지방선거	80	-	80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379
16	제5회 지방선거	29	-	29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18
17	제6회 지방선거	111	1	110	제8회 지선(낙선)	-
18	제6회 지방선거	24	15	9	제8회 지선(낙선)	14
19	제6회 지방선거	33	33	-	제8회 지선(당선)	30
20	제7회 지방선거	136	6	130	제22대 국선(낙선)	67
2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64	28	136	제6회 지선(낙선)	44

※ 참고: 노란색 셀은 소멸시효 완성자(2025. 1. 31. 기준), 성명 등 개인정보는 연번으로 대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선거보전 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결의를 실시하여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감사원이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에서 권고¹²⁾한 바와 같이, 당선무효된 자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선거비용의 징수위탁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¹³⁾를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5조의2¹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https://www.bai.go.kr/bai/result/organ/list>)

“지방선거의 당선 무효된 자 등으로부터 반환받는 선거비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미납 금액 전체에 대해 수입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13)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4)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 획정기한을 순연시키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정려금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외에 파견·위촉직원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277조¹⁵⁾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809억 9,200만원이고 예산현액 2,877억 3,100만원 중 2,876억 1,300만원을 집행(100%)하고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15)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80,992	280,992	-	△19,184 25,922	-	287,731	287,613	-	118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

□ 「공직선거법」 제24조¹⁶⁾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2¹⁷⁾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¹⁸⁾는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1월 31일) 현재

16)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 ⑩ 생략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7)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8)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19)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구획정 일정>

획정위 설치일	인구기준 시점	획정안 제출기한	선거구 확정기한	국회의원선거일
2022.10.11 (선거일 전 18개월)	2023.1.31. (선거일 전 15개월 달 말일)	2023.3.10. (선거일 전 13개월)	2023.4.10. (선거일 전 1년)	2024.4.10

-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 설치되어 같은 날 제1차 회의(안건: 위원장 호선)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인구기준이 확정되는 1월 31일 전까지 세 차례의 회의(제1차~제3차)를 개최하고, 인구기준 확정 후 공청회 개최를 시작하였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내역>

구분	일 시	내 용
제1차	2022. 10. 11.	위원장 호선
제2차	2022. 12. 2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진행안
제3차	2023. 1. 26.	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선거구획정안 마련 공청회 진행방안

19)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4차	2023. 2. 1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차)
제5차	2023. 3. 13.	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제6차	2023. 4. 2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차)
제7차	2023. 6. 16.	위원장 궐위에 따른 후속 절차
제8차	2023. 6. 21.	위원장 호선 (허철훈 위원)
제9차	2023. 7. 21.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제10차	2023. 9. 8.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 의결
제11차	2023. 10. 20.	위원회의 운영 방안 논의
제12차	2023. 11. 17.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문안 의결
제13차	2023. 11. 28.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제14차	2023. 12. 1.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 청취
제15차	2023. 12. 2.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제16차	2023. 12. 3.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제17차	2023. 12. 4.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제18차	2024. 2. 6.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제19차	2024. 2. 29.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획정위 설치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간격은 100일이 넘는 상황으로, 획정위 구성 후 인구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활동 및 획정 관련 회의 개최 등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 실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에 설치된 이후 인구기준이 확정되는 2023년 1월 31일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 ‘획정위 운영규정안’, ‘획정위 회의진행안’ 등으로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인구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획정위가 선거구획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2023년 1월 31일 인구기준 확정 후 2월 6일에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과 선거구획정안 제출시점(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의 간격은 약 40여일로, 획정위가 그 기간 동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역 현지의견 청취, 정당의견 청취 등의 관련 절차 진행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진행하여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구기준 외에도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 등이 있는 바,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의 결정 방법 및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구기준 확정 이후 약 40여일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시·도별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인구 상·하한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따라서, 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일정 기간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 획정 기한을 순연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보완을 통해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위촉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⁰⁾ 이에 근거하여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사전투표 포함)에게는 9만원, 개표사무원에게는 7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선거사무 종사 위촉직원 수당기준표>

구 분		지급액
위촉직원	간사·서기	40,000원
	투표관리관	90,000원
	사전투표관리관	90,000원
	투표사무원	90,000원
	사전투표사무원	90,000원
	개표사무원	75,000원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를 토대로 재가공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투표관리관, 사무원, 개표사무원에게 각각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위촉직원들이 투표·개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20)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로 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축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수준으로 인상된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자의 실질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최근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가 다수 발생하는 등 투·개표 업무 담당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선거사무 종사자 위축의 어려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실제로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과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²¹⁾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위촉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통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당 외에도 각종 선거기간 선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특별정려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21) 퍼블릭타임즈, 공무원노조, “선거철 선관위 휴직 최고치… 선거사무는 지방공무원에 떠넘겨”, 2025.4.17.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를 월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²²⁾

□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 지급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정려금이 법상 명시된 파견·위촉공무원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선거사무 위촉직원 등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제4조(지급기준) ① 특별정려금의 지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특별정려금의 지급별 지급기준표

직급별	지급액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2. 재외선거관리(1131-3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 인력 지원 대상 공관 선별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재외선거관리 방문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관리사업의 효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등록 및 투표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각종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98억 9,100만원이며, 이 중 85억 3,900만원을 집행(86.3%)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재외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3년도									2023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9,891	9,891	-	△1,349 14	-	8,556	8,539	-	17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외선거 국외출장 효과성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관리를 위해 호주(브리즈번), 베트남(하노이), 미국(필라델피아) 등 총 10개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직원을 파견하였음.

<2024년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국외출장 내역>

구분	출장기간	출장자(직급 등 당시 기준)			출장국가(도시) (방문기관)
		소속	직급	성명	
1	3.23.~4.3.	중앙 선거기록보존소	5	유○○	레바논 (베이루트) (주레바논대사관 동명부대 재외투표소등)
		국방부	6	이○○	
2	3.23.~4.3.	중앙 위탁선거과	5	권○○	오만 (무스카트) (주오만대사관 청해부대 재외투표소등)
		국방부	6	유○○	
3	3.23.~4.3.	중앙 교육연수부	5	유○○	우간다 (엔테베) (주우간다대사관 한빛부대 재외투표소등)
		국방부	6	김○○	
4	3.23.~4.3.	중앙 법제과	5	김○○	호주(브리즈번) (주브리즈번 출장소 재외투표소등)
		중앙 정치자금조사과	7	이○○	
5	3.23.~4.3.	중앙 감사1과	4	조○○	베트남(하노이) (주베트남대사관 추가투표소등)
		중앙 기획재정과	6	서○○	
6	3.23.~4.3.	중앙 총무과	5	김○○	미국(필라델피아) (주필라델피아 출장소 추가투표소등)
		중앙 감사2과	6	이○○	
7	9.1.~9.9.	중앙 공보과	4	차○○	멕시코 (멕시코대사관), 과테말라(과테말라대사관)
		서울 중랑구	5	곽○○	
		중앙 재외선거과	6	민○○	
		울산 지도과	6	이○○	
8	11.10.~11.17.	전남 목포시	4	이○○	인도 (인도대사관, 첸나이총영사관)
		중앙 재외선거과	5	차○○	
		서울 송파구	5	김○○	
		충북 지도과	7	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체적으로, 해당 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재외투표 준비상황 지도·점검 등 지원과 재외선거 관련 의견수렴 및 외국 선거제도 연구 등과 관련된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재외선거관리 국외출장의 출장국가와 출장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출장국가”와 관련하여, 기 파견된 재외선거관 외 지역에 재외투표관리 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등 재외투표지원 대상 공관 선별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
-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으로 총 9개국, 22개 공관에 22명의 인원을 1년간(2023.6.1. ~ 2024.5.30.) 파견하고 있음.

<재외선거관 운영 현황>

대륙	국가	인원	공관명
아주	일본	3	일본(대), 나고야(총), 오사카(총)
	중국	4	중국(대), 광저우(총), 상하이(총), 칭다오(총)
	베트남	1	호치민(총)
	필리핀	1	필리핀(대)
	호주	1	시드니(총)
미주	미국	8	미국(대), 뉴욕(총), 로스앤젤러스(총), 샌프란시스코(총), 시애틀(총), 시카고(총), 애틀란타(총), 휴스턴(총)
	캐나다	2	밴쿠버(총), 토론토(총)
구주	독일	1	프랑크푸르트(총)
	프랑스	1	프랑스(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 중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호주, 베트남은 재외선거관리 인력도 파견된 국가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 파견과 별도로 재외공관의 요청에 따라 선거인 수가 많거나 선거환경이 열악한 공관에 대하여 투표관리 인력을 지원(10일 내외 국외출장)하여 왔다는 입장임.
 - 물론,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과 국외출장으로 방문한 공관에 차이는 있으나(브리즈번 vs 시드니, 하노이 vs 호치민 등), 1년간 재외선거관리 목적으로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이 있는 국가는 재외선거관이 없는 국가와 비교해 재외선거관리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재외선거관과 중복하여 국외출장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방문시기”와 관련하여 미국, 베트남, 호주 등 6개국은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시기(3.27. ~ 4.1.)에 맞추어 비슷한 시기(3.23. ~ 4.3.)에 출장을 갔으나, 멕시코, 인도는 재외선거가 치러진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방문하여 재외선거관리 방문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짐.
- 재외선거가 치러진 후 이루어진 국외출장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외선거 선거평가와 의견수렴 등의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 국외출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재외유권자 의식조사”가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선거가 치러진지 수개월이 지난 후 방문하는 국외출장이 재외선거관리 목적의 국외출장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선거 전·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장목적 비교>

“선거 전”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	“선거 후” (멕시코) 출장 결과보고서
가. 재외투표 준비상황 지도·점검 등 지원 ○ 재외(추가)투표소 설비 및 재외투표 회송 관계서류 구비 지원 ○ 투표관리 교육업무분담 실시 나. 재외투표소관리자·투표사무원 역할 수행 ○ 재외투표의 개시·진행·마감 등 재외투표 관리 지원 ○ 투표소 질서유지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처리 등 다. 재외투표 인계·인수 ○ 매일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자수 계산, 재외투표 포장·봉인 ○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투표 인계 및 투표용지 발급기 등 봉인	5 출장목적 ○ (선거평가) 재외선거 결과 평가 및 현지 실태점검 등 ○ (의견수렴) 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한인회장 등 의견청취 ○ (선거연구) 외국 선거제도 연구를 통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자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목적 및 설계>

I.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재외국민의 관심도, 투표참여 의식, 공명선거 홍보활동 평가, 선거 분위기에 대한 평가, 재외선거 중점 해결과제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의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재외선거의 효율적인 관리, 홍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I.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전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표 본 수	▶ 유효표본 총 1,500명 ※ 아주 600명, 미주 600명, 유럽 210명, 중동 60명, 아프리카 30명
표본추출	▶ 대륙별 재외국민 수 비례 임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2.49%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기간	▶ 2024년 7월 23일(화) ~ 9월 10일(화) [7주간]
조사수행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국회의원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2024.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유권자 의식조사의 경우 재외선거 제도개선 활용 목적으로 전체 재외국민을 모집단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여론조사인 반면, 재외선거 평가 등 목적의 국외출장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선거 관리실태 점검, 재외공관 선거환경 파악, 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해 내실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이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선거 관리실태 점검과 재외공관의 선거환경 파악 등을 위해서는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적기에 방문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지 5개월(멕시코) 또는 7개월(인도)이 경과한 시기에 재외선거관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지원을 위한 국외출장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선별과 재외선거관리 방문 목적에 부합한 국외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재외선거인 투표율 제고 및 국외부재자 규모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내역사업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명부작성 등 재외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재외선거 사무들을 위한 사업임.
- 재외선거는 선거권·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했던 당시 「공직선거법」(법률 제5262호)²³⁾이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2009.2.12.)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2009년 개정 이후 제19대 총선(2012)부터 최근 제22대 총선(2024)까지 실시되었고,²⁴⁾²⁵⁾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시 실시되며, 투표권자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등록한 ①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과 150~60일 전까지 신고한 ②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체류자)임.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24) 대통령 선거: 제18대(2012), 제19대(2017), 제20대(2022)

국회의원 선거: 제19대(2012), 제20대(2016), 제21대(2020), 제22대(2024)

25) 제19대 총선(2012.4.)이 제18대 대선(2012.12.)보다 먼저 치러졌고, 가장 최근의 제21대 대선(2025)은 제외함.

- 역대 선거별 선거인 및 투표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전체 선거인 147,989명, 투표자수 92,919명 (재외선거인 투표자수 7,685명+국외부재자 투표자수 85,234명), 전체 투표율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 전체 투표율 62.8% 중 국외부재자 투표율은 71.1%인데 반해, 재외선거인 투표율은 27.4%에 그침. 역대 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인 투표율은 국외부재자 투표율의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어 국외부재자에 비해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가 제약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역대 선거별 선거인 및 투표자 현황>

(단위 : 명(수), %)

	전체 선거인* (A)	재외선거인(B) 국외부재자(B)	개별 투표자 (C)	전체 투표율 (C/A)	개별 투표율 (C/B)
제19대 총선 (2012)	123,571	19,936 103,635	56,456	45.7	- -
제18대 대선 (2012)	222,389	- -	158,196	71.1	- -
제20대 총선 (2016)	154,206	44,073 110,133	9,915 53,882	41.4	22.5 48.9
제19대 대선 (2017)	294,628	47,297 247,331	18,165 203,808	75.3	38.4 82.4
제21대 총선 (2020)	171,951	26,048 145,903	3,302 37,556	23.8**	12.7 25.7
제20대 대선 (2022)	226,162	29,182 196,980	12,124 149,556	71.5	41.5 75.9
제22대 총선 (2024)	147,989	28,092 119,897	7,685 85,234	62.8	27.4 71.1

*선거인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재외선거인과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임. 투표자는 선거인 중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을 의미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음으로, 전체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는 2년 전 선거에 비해 약 40% 줄어들었고, 국외부재자의 절대 규모도 코로나19로 해외활동이 어려웠던 2020년보다 더 적은 수준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약 3달을 신고 기간으로 하고 있고, 서면·전자우편·홈페이지 등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국외부재자 선거인 규모의 축소에 대해 외부 여건 변화, 홍보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⁶⁾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관리사업의 효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등록 및 투표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낮은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투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외부재자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등록 절차 및 기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운영 개선이 필요함.

2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생략)

3.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충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2억 5,800만원이며, 이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89.1%)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58	258	-	△18	-	240	230	-	10	13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 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법적 근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결산 대상에 누락되어 있음.
- 2024년에 위탁단체가 부담한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납부액 10억 5,100만원 중 7억원을 집행(66.6%)하고, 3억 5,100만원을 반환하였음.

<2024년 위탁선거관리경비 납부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선거종류	선거수	납부액	집행액	반환액	집행률
2024년	의무위탁 ²⁷⁾	39	1051	700	351	66.6
	임의위탁 ²⁸⁾	-	-	-	-	-
	전체 위탁선거	39	1051	700	351	66.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 “의무위탁”이란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에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선거로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 등이 있음.

28) “임의위탁”이란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선거로서, 정당의 당내경선,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등이 있음.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78조(선거관리경비)²⁹⁾에 따르면 위탁단체는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④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을 부담하고, 국가는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와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을 거치지만,

-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채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경우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
으로 위탁단체 부담 위탁선거경비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경비산출
→ 납부 → 집행 → 반환의 절차를 거침.

<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

구 분	내 용	
경비부담	위탁단체	국가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이하 아래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참고	⇒ 통상적인 국가재정 절차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반환 (선관위 →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³⁰⁾, 위탁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³¹⁾된 국가사무로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위탁선거법」에는 위탁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³²⁾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도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국회 결산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음.

30)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32) 경비 부담주체,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반 관련 국회 시정요구>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1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 경비를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납부 받아 단순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수입·지출로 보기 어렵고, 선거의 규모 및 시기 예측 곤란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수입·지출인 위탁선거관리 경비를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①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② 현물출자, ③ 외국차관의 전대, ④ 차관물자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때, ⑤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³³⁾ 「정부기업예산법」은 회전자금³⁴⁾을,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 수익금³⁵⁾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35)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한편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³⁶⁾이 공포·시행(2025.8.14.)되어, 위탁선거경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선거 시행 전후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25. 8. 14. 일부개정)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예산의 분산 편성·통합 집행과 동일 업체와의 장기·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등 재정운용 관련 법령과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상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3억 5,400만원이며, 예산현액 11억 7,000만원 중 1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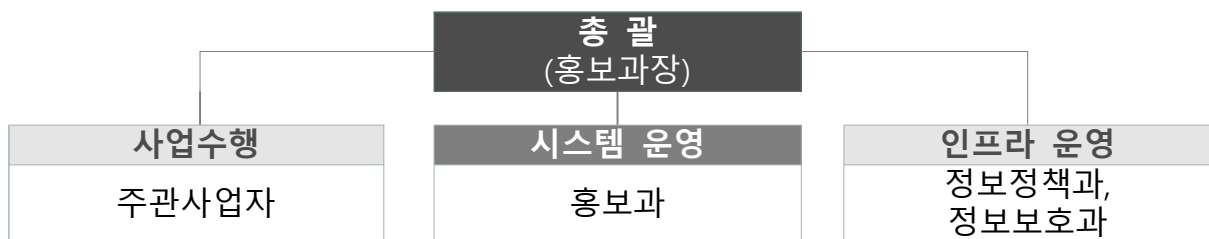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354	1,354	-	△190 6	-	1,170	1,155	-	15	74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분산 편성·통합 집행 및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하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과 서버·소프트웨어·DB 등 정보화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위탁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임.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운영 체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제안요청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홈페이지 외에도,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① 사업 예산의 분산 편성·통합 집행 사용 지양

- 최근 5년간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의 계약내역을 검토한 결과, 타 세부사업인 “재외선거관리”(1131-305) 및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예산을 통합하여 반복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2020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210-15)	326	288	1.16.~6.30.	인○○○○씨	제한→수의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32	28	7.16.~12.31.	인○○○○씨	제한→수의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36	31			
2021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07	189	1.15.~12.31.	인○○○○씨	제한→수의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41	39			
2022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07	190	1.14.~12.31.	인○○○○씨	제한→수의
202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37	232	1.1.~12.31.	N○○○○○○○씨	제한→수의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50	50			
2024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210-15)	327	318	1.1.~5.31.	N○○○○○○○씨	제한→수의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36	36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27	222	6.14.~12.31.	N○○○○○○○씨	제한→수의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분산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하하고,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 ☐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홈페이지 및 국회의원 선거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추진 시, 대표홈페이지의 서버·솔루션·DB 등 정보시스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홈페이지 운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통합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을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업에 분산 편성하고 통합 집행하는 방식은 세부사업별 예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사업별 집행실적 관리와 성과평가의 정확성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의 통합발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 전용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30여 개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내역사업을 개별 계약방식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어, 기술·인력·예산 등 자원의 집약적·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유형별·기능별로 분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계약절차의 단순화, 사업관리의 체계화, 인프라 및 인력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회계연도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기간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1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210-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429	417	23.12.19. ~24.04.30.	휘○○○○ ○○○크	제한>수의
2		선상투표시스템 위탁관리 사업	55	55	24.01.16. ~24.04.10.	청○○리(주)	수의
3		공약이슈트리 및 웹디자인개선	40	18	24.02.15. ~24.05.31.	(주)코○ ○○○즈	수의
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정책공약마당 유지관리		20	24.02.15. ~24.12.31.	(주)위○필	수의
5		2024년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제작 및 유지·보수 사업	40	40	23.12.12. ~24.12.31.	(주)웹○운	수의
6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210-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327	318	23.12.26. ~24.05.31.	N○○○○○ ○○씨(주)	제한>수의
	재외선거관리 (1131-305-210-15)		36	36			
7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210-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75	75	23.12.26. ~24.12.31.	(주)데○○국	제한>수의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210-15)		55	54			
8	재외선거관리 (1131-305-210-15)	재외투표용지 발급프로그램 기능개선	50	50	24.01.01. ~24.04.12.	보○ ○○○○지(주)	수의
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2차)	105	100	23.11.09. ~24.04.30.	휘○○○○ ○○○크	제한>수의
10	위탁선거관리 (1131-306-210-15)	2024년도 위탁선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20	20	24.09.25. ~24.11.30.	(주)데○○국	수의
11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210-15)	2024년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관리 위탁 운영 계약	218	15	23.12.20. ~24.02.29.	(주)위○필	수의
12		2024년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계약		118	23.12.28. ~24.12.31.	(주)에○○○이	일반>수의
13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구성변경		12	24.09.20. ~24.12.20.	(주)명○ ○○○스	수의
14		민주시민교육 운영 프로그램 수정		10	24.10.14. ~24.12.20.	(주)위○필	수의
15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210-15)	정치후원금센터 유지관리	20	20	24.01.24. ~24.12.31.	(주)위○필	수의
16		2024년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227	222	24.06.14. ~24.12.31.	N○○○○○ ○○씨(주)	제한>수의
17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210-15)	디지털포렌식 온라인인증시스템 유지관리	120	124	24.01.17. ~24.12.31.	제○코	제한>수의
18		지능형선거범죄대응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90	185	23.12.01. ~24.12.31.	비○랩	제한
19	선거방송토론 (1135-314-210-15)	2024년 중앙토론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6	6	23.12.22. ~24.12.31.	(주)한○○○○ ○션	수의

연번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기간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2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210-15)	지방의원후원회 도입에 따른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30	20	24.06.04. ~24.07.31.	(주)에○○○이	수의
21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210-15)	2024년 선거법규포털 등 유지보수 용역	63	62	23.12.11. ~24.12.31.	(주)젠○○○트	제한
22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210-15)	e-제안지식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관리 용역계약	20	20	24.02.22. ~24.12.31.	(주)다○넛	수의
23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210-15)	2024년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20	117	23.12.08. ~24.12.31.	(주)인○○○○ ○○템	제한>수의
24	전산운영경비 (7132-350-210-15)	2024년 인터넷망 화상회의시스템 운영	19	19	23.12.14. ~24.12.31.	(주)새○○즈	수의
25	온라인투표기반조성 (7136-500-210-15)	2024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505	500	23.12.04. ~24.12.31.	N○○○○○ ○○씨(주)	제한
26	선거정보시스템구축 (7136-523-210-15)	2024년도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100	98	23.11.03. ~24.12.31.	한○ ○○○○스	제한>수의
27		2024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2,073	2,050	23.12.14. ~24.12.31.	씨○○○피	제한>수의
28		2024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사업	461	456	23.12.04. ~24.12.31.	비○앤	제한
29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7132-344-210-15)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	3	23.12.20. ~24.12.31.	(주)한○○○○ 솔	수의
30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22	22	23.12.20. ~24.12.31.	와○○○임(주)	수의;
31		선거정보도서관 및 사이버선거역사관 유지보수	22	22	23.12.20. ~24.12.31.	(주)엠○○○트	수의
32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1	11	23.12.20. ~24.12.31.	한○○○○○ ○솔(주)	수의
계			5,462	5,31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반복적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

☐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은 최근 5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부 연도에는 계약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위탁운영사업의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었음.

<대표홈페이지 위탁운영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비고
2020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210-15)	326	288	1.16.~6.30.	(주)인○○○○씨	제한→수의	긴급입찰 /2회 공고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32	28	7.16.~12.31.	(주)인○○○○씨	제한→수의	1회 공고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36	31				
2021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07	189	1.15.~12.31.	(주)인○○○○씨	제한→수의	긴급입찰 /1회 공고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41	39				
2022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07	190	1.14.~12.31.	(주)인○○○○씨	제한→수의	긴급입찰 /1회 공고
202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37	232	1.1.~12.31.	NON○○○○○○씨(주)37)	제한→수의	긴급입찰 /1회 공고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50	50				
2024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210-15)	327	318	1.1.~5.31.	NON○○○○○○씨(주)	제한→수의	긴급입찰 /1회 공고
	재외선거관리(1131-305-210-15)	36	36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210-15)	227	222	6.14.~12.31.	NON○○○○○○씨(주)	제한→수의	긴급입찰 /2회 공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동일 업체의 단독응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하였고,³⁸⁾ 계약 공백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업자가 위탁운영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7) (주)인○○○○씨는 NON클라우드에 인수된 후 NON○○○○○○씨(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음.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상 절차 위반은 없더라도, 동일 업체와의 장기·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 신규업체 진입 기회 제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경우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부분의 계약이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고,³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단독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점은 실질적인 경쟁 부재 및 신규업체 참여 기회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긴급입찰 적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설명회 개최, 평가기준의 다변화 등 입찰절차의 내실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과 같은 단년도 위탁운영 계약방식은 매년 입찰 및 계약절차를 반복하여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크고, 사업자 변경 및 계약 지연으로 인한 운영의 불확실성도 존재함. 따라서 정보시스템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위탁운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 2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의 기간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4. 제1호의 사업과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

5.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 공정선거지원단은 한시적 인력구조에 따른 전문성·지속성 부족과 성과관리 및 교육체계 미비로 인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교육체계 정비, 유경험 인력 활용 기반 마련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109억 4,700만원이며, 예산현액 102억 8,700만원 중 100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0,947	10,947	1	△ 661	-	10,287	10,025	-	262	7,43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 제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10조의2⁴⁰⁾에 따라 선거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되는 조직임.

□ 2024년 기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은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1131-301)의 내역사업인 “위법행위예방단속”과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의 내역사업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각각 구분·편성되었음. 이는 평시에는 소규모 상시인력 중심으로, 선거기간에는 한시인력 증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인원>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	-	2,345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3,965	-	-	-	2,897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	-	-	-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357	497	267	370	360
지방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26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구성 및 예산>

구 분	상시인력	선거시 추가인력
세부사업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운영기간	상시	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 후 10일
인원	중앙, 시·도, 구·시·군 10인 이내	중앙, 시·도 10인 이내 추가 구·시·군 20인 이내 추가
2024년 예산	64억 4,100만원 • 일용임금(110-14): 4,79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38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72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539백만원	239억 9,500만원 • 일용임금(110-14): 16,31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3,15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6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2,633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1,835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년 예산은 총 304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는 64억 4,100만원,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에는 239억 9,5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음. 전체 예산현액은 254억 6,400만원이며, 이 중 253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정선거지원단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추경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0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30,012	30,012	△514	29,498	24,861	-	4,637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5,821	5,821	△7	5,814	4,131	-	1,683
2021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7,678	7,678	-	7,678	6,510	-	1,168
2022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18,520	18,520	△1,387	17,133	15,003	-	2,130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85	85	-	85	67	-	18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7,776	7,180	-	7,180	6,805	-	375
2023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71	71	-	71	69	-	2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7,019	7,019	-	7,019	6,499	-	520
2024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3,995	23,995	△4,561	19,434	19,432	-	2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6,441	6,441	△411	6,030	5,874	-	15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은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체 인지하였으며, 이 중 17건은 고발, 8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음. 이는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조치 건수(1,764건) 대비 약 7.3%이며, 최근 5년간 누적 기준(6,194건)으로는 약 12.1%(752건)에 해당함. 같은 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으로 약 253억원이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정량적 실적은 투입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 분		조치 유형					비고
			계	고발	수사의뢰	이첩	경고	
2020	전체 조치 건수		986	270	46	37	63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건수	113	19	4	-	90	
		비율	11.5	7.0	8.7	-	14.2	
2021	전체 조치 건수		276	54	28	9	185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건수	22	2	-	-	20	
		비율	8.0	3.7	-	-	10.8	
2022	전체 조치 건수		2,383	509	211	47	1,616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건수	408	42	31	7	328	
		비율	17.1	8.3	14.7	14.9	20.3	
2023	전체 조치 건수		785	186	45	15	539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건수	81	15	4	-	62	
		비율	10.3	8.1	8.9	-	11.5	
2024	전체 조치 건수		1,764	386	75	14	1,28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건수	128	17	8	-	103	
		비율	7.3	4.4	10.7	-	8.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실적은 한시적 인력 중심의 운영 구조와,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채용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감시 활동의 연속성과 대응 역량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정선거지원단 선발 현황>

(단위: 명)

연도	선발인원	직업별 분류				연령별 분류					지원단 유경험자
		주부	대학생	취업준비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20년	4,323	2,323	80	845	1,075	398	483	1,468	1,389	585	2,012
2021년	497	216	3	184	94	72	100	183	121	21	323
2022년	4,538	2,040	121	869	1,508	482	374	1,276	1,607	799	1,893
2023년	370	174	-	100	96	38	77	131	103	21	300
2024년	3,257	1,552	31	517	1,157	221	229	690	1,320	797	1,915
계	12,985	6,305	235	2,515	3,930	1,211	1,263	3,748	4,540	2,223	6,44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관계법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 관리기준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5년간 유경험자 비율이 49.6%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참여자 대상 심화교육이나 인력풀 운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성과의 누적 및 인력관리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위법행위 감시뿐만 아니라,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홍보 및 계도 등 다양한 정성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성적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환류체계가 부재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② 인력풀 등 지속가능한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은 민주주의 동반성장을 위한 ODA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굿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7억 8,4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을 집행(87.4%)하고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784	784	-	-	-	784	685	-	99	4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이하 ‘선거참관프로그램’)은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의 내역사업으로, 신생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관리기법을 공유·전파하여 수원국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관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프로그램(항)에 편성된 내역사업인 “서울국제선거포럼(7132-345)”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음.

<내역사업별 비교>

구 분	선거참관프로그램 (1133-334)	서울국제선거포럼 (7132-345)
사업목적	신생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관리기법을 공유·전파하여 수원국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ODA 사업	국가 간 선거제도의 비교·연구 및 관리기법 공유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국제회의 개최사업
기 간	2024. 4. 4.(목) ~ 4. 12.(금)	2024. 4. 8.(월)
장 소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외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참가인원	<u>54명</u> • 19개국 선거기관 관계자 46명 • 국제기구 관계자 4명 • 주한외교공관 관계자 4명	<u>116명</u> • 선거참관프로그램 참석자 50명 • 중앙선거관위·A-WEB·주한외교공관 등 66명
참가국	감비아, 네팔,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몰디브, 몽골, 방글라데시, 부탄,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피지(19개국)	감비아, 네팔, 도미니카연방, 몰디브, 몽골, 방글라데시, 부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피지(16개국) ※ 선거참관프로그램 대표단 중 3개국(멕시코, 에티오피아, 페루) 불참
주요일정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소 참관 •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위 등 방문 • 2024 서울국제선거포럼 참석	• 주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 -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찾다 • 개회식·폐회식, 1·2·3세션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참관프로그램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1133-334)	국제교류협력 (7132-345)	집행액	수령인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계	376,000	89,000	447,709	-
일반수용비 (210-01)	4,000	26,000	30,000	(주)컬쳐마케팅컴퍼니
임차료 (210-07)	17,000	3,000	20,000	
일반용역비 (210-14)	77,000	30,000	107,000	
사업추진비 (240-01)	8,000	17,000	25,000	
국외업무여비 (220-02)	270,000	13,000	247,987	(주)컬쳐마케팅컴퍼니
			17,722	중앙선관위 직접 집행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⁴¹⁾ 또한, 동법 제47조⁴²⁾는 각 장·관·항 간 예산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상 지출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의 사전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4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참관프로그램과 서울국제선거포럼은 모두 선거제도 관련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외형상 유사성이 있으나, 각각 상이한 프로그램(항)에 편성된 별개의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절차 없이 두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사업 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의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7조의 집행원칙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유사 방식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⁴³⁾ 그러나 정책효과 여부와는 별개로, 세출예산은 목적과 단위별로 편성·의결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간 예산 통합 집행은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단위 간 경계를 훼손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세출예산의 목적별 집행 원칙과 예산 항목 간 구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정통제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3) “선거참관프로그램” 결과보고서(발췌)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선거 관련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24 서울국제선거포럼(SIFE)」을 연계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였음. 특히 참관단을 발제자 및 청중으로 초청하여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였고, 행사장 대관료, 포럼 참석자 체재비 등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었음. (중략) 본 사업은 ODA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진국가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급변과 같이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연계 개최하여 선진국가 및 국제기구 측 참석자를 사회자·발제자로 초청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 서방 선진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투·개표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및 위원회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선거참관프로그램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사업수행업체는 세부사업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1133-334)	국제교류협력 (7132-345)	
일반수용비(210-01)	4,000	26,000	30,000
임차료(210-07)	17,000	3,000	20,000
일반용역비(210-14)	77,000	30,000	107,000
국외업무여비(220-02)	270,400	15,000	285,400
사업추진비(240-01)	8,000	17,000	25,000
계	376,400	91,000	467,4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는 선거참관프로그램(1133-334)에 참가한 방글라데시 등 8개국에 대한 항공임 및 숙박비 등 1,300만원을 서울국제선거포럼(7132-345)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 참가자에게 지급한 정당한 국외업무여비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8개국 여비 대부분은 선거참관프로그램 예산에서 지급된 반면, 서울국제선거포럼 예산에서는 방글라데시 항공임과 1일분 여비, 감비아 등 7개국의 1일분 여비만 별도로 지급된 점, 그리고 포럼과 참관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16개국 중 이들 8개국에 대해서만 포럼 예산이 지급된 점은 집행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없었음을 보여줌.
- 이는 실제 활동과 관계없이, 세부사업별 국외업무여비를 형식적으로 조정하여 8개국의 1일치 여비를 포럼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집행방식은 세부사업 간 편성 목적의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참가국별 국외업무여비 지원 내역>

참가국	국외업무여비 지원 내역	
	선거참관프로그램 (1133-334)	서울국제선거포럼 (7132-345)
네팔, 멕시코,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페루, 피지	• 항공임 • 숙박비(8일분) • 일비·식비	-
방글라데시	• 숙박비(7일분) • 일비·식비	• 항공임 • 숙박비(1일분) • 일비(1일분)
감비아, 도미니카연방,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 항공임 • 숙박비(7일분) • 일비·식비	• 숙박비(1일분) • 일비(1일분)
태국(자부담)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본 사업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사업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등 여러 예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수행업체에 일괄 지급하였으며, 업체가 항공사·호텔·인쇄소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사운영 대행계약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⁴⁴⁾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 및 지출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행사대행업체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과목별 집행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것은 집행구조의 적정성과 회계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교통수단 임차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업체는 대형버스, 미니버스, 승합차 등 차종과 운행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약 70만원의 정액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음. 이는 차량 사양, 운행 거리, 유사 계약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가 산정 방식으로, 비용 산정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4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I. 비목별 지침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차량 임차 현황 및 비용>

(단위: 천원)

일자	이용시간	이동내역	수량 및 금액(vat 포함)			
			차종	수량	단가	금액
4.5.(금)	4시간	헌법재판소	45인승 버스	2	698	1,396
4.6.(토)	4.5시간	서울·경기지역 사전투표소	25인승 버스	1	698	4,188
			15인승 승합차	5	698	
4.7.(일)	9시간	역사박물관, 경복궁, 청와대	45인승 버스	2	698	1,396
4.9.(화)	9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45인승 버스	2	698	1,396
4.10.(수)	18시간	서울·경기지역 투·개표소	25인승 버스	1	698	4,628
			15인승 승합차	5	698	
			15인승 승합차 (추가 임차)	1	440	
계				19	-	13,0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사업수행자가 일반용역비 외에 여비 등 타 예산 과목을 집행하였으며, 비합리적인 단가 산정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항들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과목별 집행 기준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자에게 일반용역비 등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지급하고, 국외업무여비·임차료 등 직접경비는 주관기관이 계약 및 집행하여야 함. 또한, 정산 단계에서는 예산과목별 실집행 내역과 편성 목적 간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기준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